

「가스안전공사 비위 제보」 조사 결과

1. 조사결과

① (○○○) 이권개입, 알선행위, 권한남용 의혹

- ① (이권개입 의혹) ○○○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◇◇사업 담당자에게 설 명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제공한 것은 사실로 확인됨.
 - 다만, 제공된 자료는 선정평가와 일부 관련이 있어 이권개입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, 직접적인 개입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고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
- ② (알선행위 의혹) ○○○가 공모계획 수립전에 미공개 내부자료를 공모 사업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로 확인됨.
 - 다만, 제공된 자료가 추후 공개된 공고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되어 입지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
- ③ (권한남용 의혹) ○○○가 ▼▼▼위원회 ◎◎◎를 지시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, 심의과정 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음

② AAA, BBB의 내부신고 무마 의혹

- (내부신고 처리 부적정) AAA, BBB이 내부신고를 무마하였다는 의혹 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상담 처리 등 절차 위반 확인

2. 조치결과

① ○○○ : ‘의견서 송부’ (우리부→기재부)

- (검토내용) ○○○의 공모사업의 개입 동기, 비위의 정도, 고의·중과실 여부,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고려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움

② BBB : ‘개인 경고’(우리부→가스안전공사)

- 내부신고서의 접수 여부 판단은 감사실 소관사항임에도 개인적 판단 으로 인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소홀, 산업부 「감사규정」 제32조에 따라 엄중 ‘경고’ 조치

③ AAA : ‘개인 주의’(우리부→가스안전공사)

- 행동강령 위반행위 의혹과 관련, 상담기록부 미작성 및 사실확인 등 미조치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소홀, 산업부 「감사규정」 제32조 에 따라 엄중 ‘주의’ 조치